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우원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0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1.

발의자 : 우원식 · 이찬열 · 김종훈
최경환^국 · 어기구 · 강병원
조배숙 · 안민석 · 이정미
김해영 · 박정 · 고용진
김현권 · 서영교 · 박남춘
서형수 · 김영호 · 윤후덕
김병관 · 박재호 · 백혜련
김정우 · 윤종오 · 위성곤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3년 드러난 원전 납품비리 사고와 잇따른 원전 고장, 원전 가동 중단 등으로 인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,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볼 수 있음.

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가 중요 한 분야로 부각됨에 따라 원자력의 이용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분리하여 안전규제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한 바 있음.

그러나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 자격에는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

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.

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준하도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 2 신설).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신설한다.

제9조의2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
 3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
 4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
-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9조의2(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p> <p>2. 「정당법」 제22조에 따른 당원</p> <p>3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</p> <p>4.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,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</p> <p>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.</p>